

의안번호	제 459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2월 일 (제 286 회)

**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 
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0년 1월 14일

##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459
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1. 14.
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# 1. 제안이유

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의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,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 명칭 변경
  - 공유재산을 3분류 체계에서 2분류 체계로 단순화하여, "보존재산"을 "행정재산"에 포함하고, "잡종재산"의 명칭을 "일반재산"으로 변경
- 나.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기준 조정(안 제6조)
  -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금액을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자율성 확대와 행정력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- 나. 기타
  - 1) 신구조문대비표, 별첨
  - 2) 입법예고 : 생략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행정재산 · 보존재산"을 각각 "행정재산"으로, 같은 조 제1항 중 "잡종재산"을 각각 "일반재산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"을 "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 중 "행정 · 보존재산"을 "행정재산"으로, 같은 항 제3호 중 "잡종재산"을 "일반재산"으로 각각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"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"을 "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"으로, 같은 항 제3호 중 "2천만원"을 "5천만원"으로,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행정재산 · 보존재산"을 "행정재산"으로, 같은 호 가목 중 "2천만원"을 "5천만원"으로, 같은 호 나목 중 "2천만원"을 "5천만원"으로 각각 한다.

제3장의 제목 "행정재산 및 보존재산"을 "행정재산"으로 한다.

제19조 중 "행정재산 · 보존재산"을 "행정재산"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, 제2항 중 "행정재산 · 보존재산"을 각각 "행정재산"으로 한다.

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행정재산 · 보존재산"을 "행정재산"으로 한다.

제23조 중 "행정 · 보존재산"을 "행정재산"으로 한다.

제24조 제목 중 "행정 · 보존재산"을 "행정재산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5항 중 "행정 · 보존재산"을 각각 "행정재산"으로 한다.

제25조 제목 중 "잡종재산"을 "일반재산"으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"잡종재산"을 "일반재산"으로 한다.

제26조 중 "잡종재산"을 "일반재산"으로 한다.

제40조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4항 및 제5항 중 "잡종재산"을 각각 "일반재산"으로 한다.

제42조 중 "잡종재산"을 "일반재산"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위임사무) ① (생 략) 1. (생 략) 가. 해당 관서에 속하는 <u>행정재산</u> · <u>보존재산</u> 의 관리와 사용·수익허가 나. 해당 관서에 속하는 <u>잡종재산</u> 의 관리와 대부 2.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나.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<u>행정재산</u> · <u>보존재산</u> 의 용도변경·폐지 다.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<u>잡종재산</u> 의 매각·교환·양여·대부·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라. 교육청의 <u>행정재산</u> · <u>보존재산</u> 의 관리와 사용·수익 허가 3. (생 략) 가. 해당 관서에 속하는 <u>행정재산</u> · <u>보존재산</u> 의 관리와 사용 수익 허가 나. 해당 관서에 속하는 <u>잡종재산</u> 의 관리와 대부(예교재산의 대부는 제외)	제4조(위임사무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가. ----- <u>행정재산</u> · <u>보존재산</u> 의 ----- ----- 나. ----- <u>일반재산</u>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<u>행정재산</u> ----- ----- 다. ----- <u>일반재산</u> ----- ----- 라. ----- <u>행정재산</u>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가. ----- <u>행정재산</u> ----- ----- 나. ----- <u>일반재산</u> ----- -----
제5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) ①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(이	제5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) ①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---



현 행	개 정 안
나. 시 · 군의 읍 · 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<u>2천만 원</u> 이하의 재산	나. ----- ----- ----- 5천만 원 -----
<b>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</b>	<b>제3장 행정재산</b>
제19조(관리 및 처분) 재산관리공무원은 관리하는 <u>행정재산</u> · <u>보존재산</u> 의 유지 ·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.	제19조(관리 및 처분) ----- ----- <u>행정재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0조(사용 · 수익허가의 제한) ① <u>행정재산</u> · <u>보존재산</u> 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,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. ② <u>행정재산</u> · <u>보존재산</u>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 · 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.	제20조(사용 · 수익허가의 제한) ① <u>행정재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② <u>행정재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사용 · 수익허가) <u>행정재산·보존재산을 사용 · 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</u>	제21조(사용 · 수익허가) <u>행정재산</u> ----- ----- -----.
제23조(사용 · 수익허가부의 비치) <u>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 · 보존재산의 사용 · 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· 보존하여야 하며,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</u>	제23조(사용 · 수익허가부의 비치) <u>행정재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4조( <u>행정 · 보존재산의 위탁관리</u> )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<u>행정 · 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 12조제 2항과 제3항,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용 · 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·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</u> ② 재산관리관은 제 1항에 따라 <u>행정 · 보존재산을 위탁받은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 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 · 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 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· 징수하여야 한다.</u>	제24조( <u>행정재산의 위탁관리</u> ) ① ----- <u>행정재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<u>행정재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

현 행	개 정 안
<p>③ 제1항에 따라 <u>행정·보존재산</u>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 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과 영 제 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<u>행정·보존재산</u>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.</p>	<p>③ ----- <u>행정재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⑤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행정재산</u>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제25조(잡종재산 대부의 준용)	제25조(일반재산 -----)
<b>제4장 잡종재산</b>	<b>제4장 일반재산</b>
제26조(연고권 배제) <u>잡종재산</u> 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	제26조(연고권 배제) <u>일반재산</u> -----
	-----
	-----
	-----
	-----
	-----

현 행	개 정 안
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.	----- -----.
제40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<u>잡종 재산</u> 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② 영 제39조제 1항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, 연립 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<u>잡종재산</u> 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<u>잡종 재산</u> 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④ 영 제39조제 2항제 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<u>잡종재산</u> 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 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	제40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 ----- 일반 <u>재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일반 <u>반재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----- 일반 <u>재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④ ----- ----- ----- <u>일반재산</u> ----- -----

현 행	개 정 안
<p>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잡종재산</u>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⑤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일반재산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42조(신탁의 종류)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<u>잡종재산</u>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·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(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 한다)으로 한다.</p>	<p>제42조(신탁의 종류) -----</p> <p>----- 일반재산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5조 (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)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**행정재산과 일반재산**으로 구분한다.

② "행정재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.

#### 1. 공용재산

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·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

#### 2. 공공용재산

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

#### 3. 기업용재산

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

#### 4. 보존용재산

법령·조례·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

③ "일반재산"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08.12.26]

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

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[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(算定)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"개별공시지가"라 한다]로 하고,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.

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
**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.

3.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